

모바일주소(WINC)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 지침

제정 2003. 07. 02

개정 2004. 08. 23

1. 개요

- 사용기간 만료가 도래(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)한 모바일주소(WINC)의 처리 절차 명시

2. 관련 근거

- 등록관리규정 제7조(모바일주소 등록의 말소)

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모바일주소를 말소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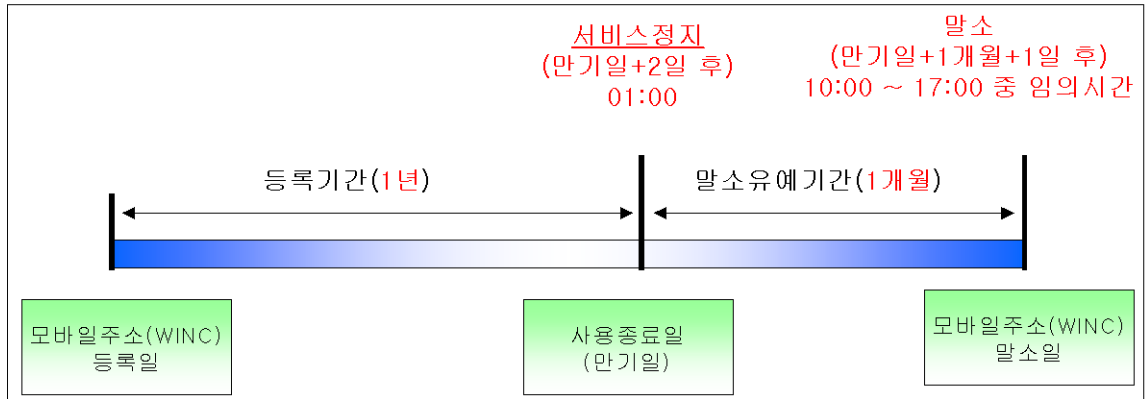
1. 모바일주소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
2. 모바일주소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

3. 모바일주소(WINC) 사용종료일 기준 처리

- 등록일 기준 1년이 경과한(사용종료일이 도래한) 모바일주소(WINC)는 유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 기준 2일 후 01:00부터 서비스 정지
-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유지신청을 하지 않거나, 유지신청 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말소일(사용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) 기준 1일 후 10:00~17:00중 임의의 시간에 일괄적으로 자동 말소처리

※ 단, 말소일이 해당 월의 말일인 경우에는 말소일 기준 다음달 1일에 말소 처리함

※ 낙장 모바일주소(WINC)의 선점을 원하는 악의적인 등록자의 폭주 예방을 위해 임의의 시간에 자동 말소토록 함



4. 기타사항

- 모바일주소(WINC) 말소에 따른 등록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행자는 말소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공지토록 함